2024년 Updated!

FP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상담 실전

보험세제_02_저축성보험 편

강사 : 다린세무회계컨설팅
세무사 김종완

과정 개요

1.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개념
2.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
3. 비과세요건 미 충족 시 처리방법
4.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

기대 효과

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개념 및 요건을 이해하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며, 비과세 요건 미 충족 시 과세여부 등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개념

보험차익 비과세 배경

■ 만기보험의 육성, 발전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얻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함

■ 다만,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반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단기(10년 미만)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

보험차익의 개념

■ 보험차익 = 보험금(또는 해지환급금) - 납입보험료

■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로 과세

- 금융소득 2천 만 원 미만 : 14%(지방소득세 별도)으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
- 금융소득 2천 만 원 이상 :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의무 발생

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

저축성 보험

-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계약자 1명 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
- 이때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합계액
- 다만,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

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

월적립식 저축성보험

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

-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계약일 것

-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(최초 계약한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포함),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

- 계약자 1명 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

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

종신형 연금보험

■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

-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, 수익 등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

- 연금 외 형태로 보험금,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

-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

-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

$$\left(\frac{\text{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}}{\text{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}} \times 3\right)$$ 이내일 것

비과세요건 미 충족 시 처리방법

저축성보험별 비과세 요건 미 충족 시, 해당 시점에 다음 순서대로 과세여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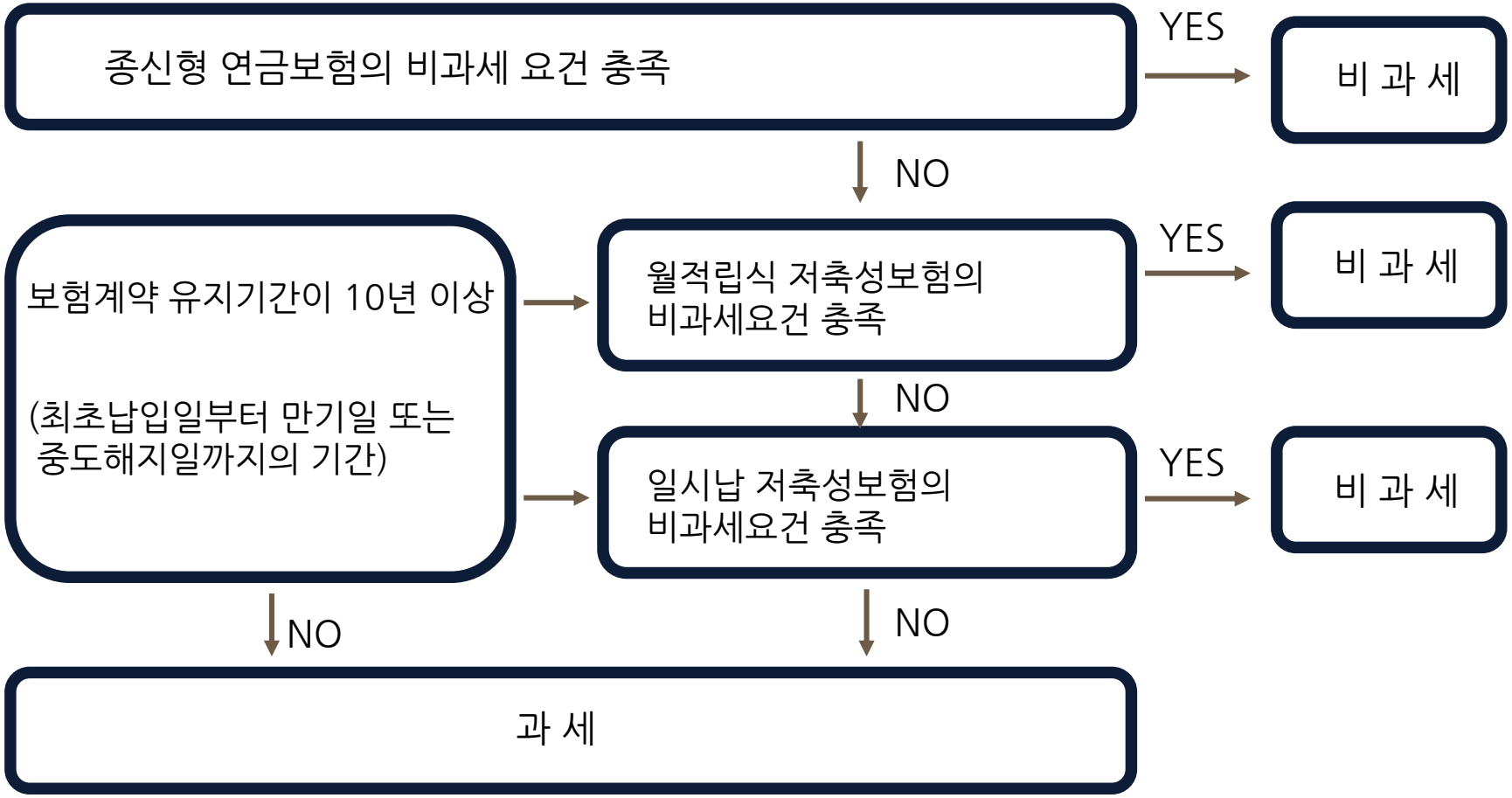

비과세요건 미 충족 시 처리방법

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에 대한 과세 방법

이자소득

- 국내에서 받는 예금 등 이자
-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
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(일정요건 미 충족 시)
- 위 거래 또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이익
-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

배당소득

- 법인의 이익배당(현금배당, 주식배당 등)
-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- 신종금융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
-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

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

■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(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포함)이 2천 만 원 초과하는 경우,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

■ 금융소득 2천 만 원 초과 분
- 다른 종합소득(근로, 사업 등)과 합산하여 산출세액 계산
- 비교과세제도 :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계산

■ 금융소득 2천 만 원 이하 분
- 원천징수세율 14%(지방소득세 별도) 적용하여 납부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납부의무 종결

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

공통점 :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수령함

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

구분	연금보험	연금저축
취급기관	생명보험회사	은행, 보험,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
세제혜택 적용요건	일시납, 월적립식 저축보험계약, 종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	보험료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
보험료 납입 시 세제혜택	없음	연금계좌 세액공제 (12% / 15%)
보험금 수령 시 세제혜택	보험차익 비과세 (이자소득세 비과세)	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가능 (3~5%, 15% 세율적용, 지방소득세 별도)
소득구분	이자소득	연금소득